



서울동부지방법원

판 결

사 건 2020가단 위약금

원 고

서울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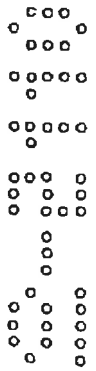
담당변호사

피 고

최후주소 전주시

변 론 종 결 2021. 1.

판 결 선 고 2021. 1.

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4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1. 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

서울동부지방법원

조정을 갈음하는 결정

사 건 2022 위약금

원고, 피항소인

서울

소송대리인 변호사

피고, 항소인

전주시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

(송달영수인 법무사 전종필)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결정사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1,7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50회로 분할하여 2022. 4.부터 2026. 5. 까지 매월 말에 34만 원씩을 지급한다. 피고가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 및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일 또는 지체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.
2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3.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구의 표시

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금 34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1.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청구원인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022. 3.

상임 조정위원



※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,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


서울동부지방법원

제 2 - 2 민 사 부 (항 소)

화 해 권 고 결 정

사 건 2021나 위약금

원고, 피항소인

서울

소송대리인 변호사

피고, 항소인

전주시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법무사 전

종필사무소(만성동)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결정 사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을 2022. 10. 31.까지 지급한다.

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

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지급한다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3.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구의 표시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4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청 구 원 인

별지 기재와 같다.

2022. 9. .

재판장 판사

판사

판사



※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 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,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